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54
----------	------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의자 : 김종희 · 이찬열 · 황주홍
김동철 · 조배숙 · 김수민
오세정 · 정인화 · 유성엽
김병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이 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곤충산업이 발전 잠재력이 큰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료용, 약용, 원예용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곤충산업 발전,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의

2 신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시행에”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한 농촌진흥청장은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센터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한 농촌진흥청장은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⑧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u>
<u><신 설></u>	
<u>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제13조의2(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

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
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곤
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
설팅

4. 곤충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
한 마케팅·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
른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센터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